

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4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3월 5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“부지면적 5만 m^2 이상”에서 “10만 m^2 이상”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부지면적 “10만 m^2 이상”으로 완화하되, 부지면적이 5만 m^2 ~10만 m^2 의 경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전문가가 교통영향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수정함

2. 주요골자

-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“10만 m^2 이상으로 하고 부지면적 5만 m^2 이상일 경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할 것”으로 변경함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별표 제1호가목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기호 8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8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·군 관리계획의 결정
- 부지면적 10만 m^2 이상
 - 단, 부지면적 5만 m^2 이상일 경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할 것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가목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기호 8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8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·군 관리계획의 결정
- 부지면적 10만 m^2 이상
 - 단, 부지면적 5만 m^2 이상일 경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할 것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]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(제3조 관련) 1.개발사업			[별표]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(제3조 관련) 1.개발사업		
구분	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	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· 심의시기	구분	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	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· 심의시기
가. 도시의 개발	1) ~ 7) (생략) 8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·군 관리계획의 결정 - 부지면적 <u>5만㎡</u> 이상 9) (생략)	(생략)	가. 도시의 개발	1) ~ 7) (현행과 같음) 8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·군 관리계획의 결정 - 부지면적 <u>10만㎡</u> 이상 - 단, 부지면적 <u>5만㎡</u> 이상 일 경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할 것 9)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